

사회봉사단규정

제 정 2012. 7. 1.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사회봉사단(이하“봉사단”이라 한다)조직과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 봉사단은 본교의 건학이념인 자립, 단정, 독행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인을 양성하여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융합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바른 우송인 상을 정립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건강한 대학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제 2장 기 구

제3조 (단장) ① 본 봉사단의 단장은 총장이 별도로 임명한다.

②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한다.

제4조 (부단장) ①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사회봉사 전담교수) 전담교수는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계획 및 교과운영 등 실무전반을 행정팀과 교무처와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본교 인사규정에 의거 임명한다.

제6조 (행정팀장) ① 행정팀장은 학생의 봉사활동을 위한 행정전반을 지원하며 팀원의 직무 수행을 지시한다.

② 봉사단의 직원은 본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의거 임면한다.

제7조 (직원) 본 봉사단의 직원은 본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의거 임면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 (설치) 본 봉사단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단장 부재 시에는 부단장이 대행한다.

제10조 (위원) ①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②사회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③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12조 (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전담 및 지도교수

제13조 (운영) ① 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및 지도교수를 둔다.

② 전담교수는 학생들의 질 높은 사회봉사를 위해 활동 내용에 대하여 단체 및 기관과 조정, 협의, 활동계획, 프로그램개발, 활동보고서 및 평가서, 해외봉사활동, 사회봉사단 대외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각 학과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봉사활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회봉사 지도교수는 학과 프로그램 담당을 자원한 교수, 프로그램이 전공 분야에 가까운 교수,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원한 교수가 한 학기 동안 학생봉사를 지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단에 업무협조를 한다.

제5장 사회봉사활동

제14조 (사회봉사 활동 신청 자격 등 제반사항) ① 사회봉사 활동 신청자격 및 제반사항 등에 관하여는 '사회봉사학점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활동구분) 봉사활동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상담과 이 메일을 통해 격려 및 지도한다.

제16조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① 사회봉사활동의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는 '사회봉사학점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사회봉사 학점 이수자의 혜택) ① 봉사활동자 중 해당 봉사기관 대표와 단체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봉사자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해외봉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사회봉사 장학생 선발 시 우대한다.

제 6장 봉사단체 선정

제18조(선정기준) 사회봉사 대상기관 및 단체 선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
- ② 인건비 절약성격 업무가 아닌 봉사프로그램(봉사의 내용, 장소, 시간 등)을 가진 기관
- ③ 농촌 봉사활동(해당 행정관청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 ④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

제 7장 학생지도

제19조 (학생지도) 전담 및 지도교수, 사회봉사단 직원은 학생들이 질 높은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에 대하여 단체 및 기관과 조정하고 협의하여 봉사활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지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